

# 기안용지

문장번호 도사 415- 861	(전화번호)	인편규정 조항 제1항
처리기간	제2부시장	시장
시행일자		
보충년월		
보고기관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가로계획계	74. 5. 20 양주승	법무담당관(고시안상사) 시민과장 문서관리계장 종합계획계장 지역계획계장
기안책임자 이영재	결재 1974 5 20 시장실	
장 유 신 조	고시제 23 호 각안 창조	
제 목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결정	

## 제1안 내부결재

1. 서울지구 철도망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경원선 성북역에 서울동부지구의 시민을 위한 화물선타의 계획을 확정 73년도 150만톤 화물시설이 이에 시설완료 되어있으며 수요 증가에 따라 점차 건설을 계속 확장하겠으므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결정하여 말라는 철도철장과 승선화물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상우로부터 요청이 있어

2. 유통업무 시설결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안을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74.2.15)를 거쳐 건설부 장관에게 통신 하였던바 건설부 고시 제 133 호(74.5.9)로 유통업무 시설결정에 따른 용도지역이 결정되었으므로

3.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과 건설부 고시 제 123 호(74.4.4)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용도지역의 지적고시와 변경된 용도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9조의 규정을 건설부

도시 제 123호 (73.4.4)에 따라 지적대리사 하에

유통업무 시설 설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2조와 동법 제 13조의  
규정(건설부 고시 제 123호 (73.4.4) 고시(서울시 1973.4.4) 제 68호)에

제 2안 고시안

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설정 및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적 승인

1. 당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설정 및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제 13 조의 규정과 건설부 고시 제 123호 (73.4.4)  
및 동 제 68호 (74.1.5)의 규정  
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대에  
비치하여 도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변경 1. 시설조성 및 용도지역 변경  
2. 관계도면 (도면상량)

부(1) 시설 조서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유통업무설비	도봉구 불계동 424 (성북역 주변)	402.700 <sup>m<sup>2</sup></sup>	성북유통업무설비

(2) 용도지역 변경 조서

지역 별	면 적 (m <sup>2</sup> )		
	기 전	변 경	변 경 후
주거지역	324,625,637	감 402,700	324,222,937
주거전용지역	1,040,612		1,040,612
상업지역	17,522,987	증 402,700	17,925,687
주공형 지역	37,709,200		37,709,200
녹지지역	339,927,564		339,927,564
계	720,876,000		720,876,000

본 조서는 서울특별시청 및 관할 구청에 보관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및 관할 구청에 보관함

제 3 안

수신 건설부장관

발신 시장

제목 등건

양시 관내 도시계획시설(유동업무설비) 결정 및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적 등인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과 건설부 고시 제123호(73.4.4)의 원관위임사항에  
따라 별첨 고시문 사본 및 도면과 같이 고시하였기 보고합니다

첨부: 고시문 사본 및 도면 각 1부

제 4 안

수신: 총무처 장관 (서울시: 공보실장)

발신 시장(과장)

제목: 관(시)보 게재의 취

1. 다음과 같이 관(시)보에 게재의 취하오나 게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시)보 게재 구분: 고시

나. " 건명: 도시계획시설(유동업무설비) 결정 및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적 등인

다. 법규 근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

첨부: 고시문 사본 2매 (1매)

제 5 안

수신: 도봉구청장

발신 시장

제목: 등건

1. 귀구 관내 도시계획사항이 별첨 고시문 사본 및 도면  
과 같이 고시되었기 홍보하니 관계 도면 정리하는 등 시  
흥지도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하고 도시계획 업무 취급  
에 착수하도록 할 것

첨부: 고시문 사본 및 도면 각 1부

제 6 안

주신: 철도정장

발신 시장

제목 동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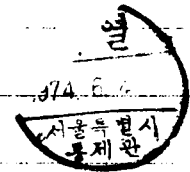
1. 시설 415-72(74.1.26) 호 도시계획 시설 결정  
 무정관 상부역 화물선라가 유동상부 설비 시설결정이 별첨  
 과 같이 고시되었기 동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고시문사본 1부

제 7 안

주신 동양주 중학동 14 성신화학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상우 발신 시장

제목 동건

1. 상부 중계 중(74.1.31) 호 무정관상부 도시계획  
 시설(유동상부 설비) 결정이 별첨 고시문사본과 같이 고시  
 되었기 동보하여 드립니다  
 첨부: 고시문사본 1부 끝



74. 5. 24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제7차 회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 제 7 차 회의 요약

안건 1 :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 결정

원안가결 통과

안건 2 : 도시계획 용도지역 일부변경 (주거전용지역지정)

10 개지구 십의지역중 원안대로 가결된 지구  
는 8 개 지구이며 재심의키로 가결된 지구는  
2 개 지구로서 내용별로 보면

(가) 원안가결통과 (8 개지구)

- |                   |                   |
|-------------------|-------------------|
| (1) 땡장동, 구거동 일부   | (2) 성북동 2가 일부     |
| (3) 신문로2가, 내수동 일부 | (4) 이태원동 일부       |
| (5) 학남동 일부        | (6) 장충동 일부        |
| (7) 연희동 일부        | (8) 홍은동 (교수단지) 일부 |

(나) 재심의키로 결의 (2 개지구)

- (1) 누상, 누하, 통의동 일부지역
- (2) 가회, 원서동 일부

안건 3 : 시장용지 시설결정  
원안가결 통과

안건 4 : 시장용지 용도변경  
원안가결 통과

안건 5 : 학교용지 시설결정  
원안가결 통과

안건 6 : 공원 일부변경  
원안가결 통과

안건 7 : 서울도시계획 기본가로 및 광장(잠실지구) 일  
부변경  
원안일부수정 가결통과.

## 제7차 회의 회의록

1. 일시 : 74. 5. 24 14:00
2. 장소 : 도시계획과장실
3. 안건 :
  1.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 결정
  2. 도시계획응도지역 일부변경
  3. 시장용지 시설결정
  4. 시장용지 응도변경
  5. 학교용지 시설결정
  6. 도시계획공원 일부변경
  7. 서울 도시계획기본가로 및 광장 (잠실지구) 일부변경

### 4. 참석위원

부위원장	손	정	목
상임위원	김	종	성
위원	나	상	기



위	권	권	대	준
	“	서	영	갑
	“	이	권	환
	“	김	준	석
	“	김	희	섭
	“	강	민	주

5. 기타 참석자

간사 (도시계획과장)      서기 (종합계획계장)

권지역계장, 이가로계장, 김영호 구획정리과과원지계장  
상정과장 (대)

6. 기    록

이    응    섭

# 회의록

※ 위원장 불참으로 강민주위원이 임시회의 진행을 맡음.

강민주위원 : 개회사 (생략)

지난번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에 대한 결과를 요약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가로제장 :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74. 5. 10) 및 소위원회 (74. 5. 20) 회의 요약보고 (낭독)

강민주위원 : 요약보고가 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위원일동 : 이의 없음.

강민주위원 : 그럼 제7차 회의를 진행하십시오.

※ 부위원장 참석으로 강민주위원으로 부터 회의 진행을 부위원장이 맡음

## 안건 : 도시계획 (유통업무설비) 시설결정

이가로계장 : 제안설명 (생략)

부위원장 : 성북역 주변현황을 재설명하십시오.

이가로계장 : 현황도설명 (생략)

나상기위원 : 교통부위는 사전협약이 있었습니까.

이가로계장 : 있었습니다.

권태준위원 : 주로 다루어지는 품목은

이가로계장 : 시멘트 및 목재등이죠.

위원일동 : 제안동의

## 안건2 : 도시계획응도지역 일부변경 (주거전용지역지정)

권지역계장 : 제안설명 (생략)

부위원장 : 홍은동 교수단지는 도면상으로 어디쯤인가

권지역계장 : 도면설명 (생략)

나상기위원 : 현재 이지역들에 대한 응도지역은

권지역계장 : 주거지역입니다.

부위원장 : 누상 누하동 지역에 대하여는 좀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

권지역계장 : 이미 행정적으로 통제되어온 지역입니다.

나상기위원 : 기존건물들은 제한을 받지않고 다만 신축과 증. 개축 그리고 높이에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군요.

권지역계장 :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법 (주거전용지역) 설명

나상기위원 : 도시의 변측현상을 막을수 있으니까 좋은 일이다.

강민주위원 : 이지역들에 대한 실제필지별 규모를 보면 20명 내지 30평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지역은 문제점이 많은것 같다.



결 의 번 호	
결 의 년 월 일	74. 5. 24
	제 7 회

결 의 사항

시 장 용 지 용 도 변 경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의안건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제출년월일	74. 5. 24

부위원장 : 여러가지 문제점을 놓고, 재고해야 되니  
누상. 누하. 통의동 지역과 가회. 원서동  
지역은 다음회의에서 재심의토록 합시다.

권지역계장 :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가회. 원서동 지역과  
누상. 누하. 통의동 일부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20개지구 심의시에 재심의키로 조처  
하겠습니다.

위원일동 : 제안동의

### 안건 3 : 시장응지 시설결정

권지역계장 : 제안설명 (생략)

나상기위원 :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권지역계장 : 네. 지어져 있습니다.

나상기위원 : 지상 1층에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권지역계장 :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 주택공사에서 이미 상가로서 분양할 지역

으로서 상행위를 하고있음니다만. 문제는  
시장법에 의해 법인설립구성이 되어야만  
허가가 되기 때문에 금번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신청한것이죠.

강민주위원 : 어제야 허가를 신청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 본인이 알기로는 이미건물분양시에  
시장으로 분양이 될줄안다.

권지역계장 : 기상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이라도 시장법  
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만하죠

부위원장 : 딱 이견은 없으신죠

위원일동 : 제안동의

#### 안건 4 : 시장용지 용도변경

권지역계장 : 제안설명 (생략)

나상기위원 : 준공업지역내 시장용지군요

권지역계장 : 그렇습니다.

위원일동 : 제안동의

## 안건 5. 학교용지 시설결정

권지역계장 : 제안설명 (생략)

나상기위원 : 농지지역에도 저촉되는군요

권지역계장 : 일부는 주거지역이고 일부는 녹지지역입니다.

간사 : 보충설명 (생략)

부위원장 : " ( " )

나상기위원 : 녹지지역에서 해제 하여주어야 되느냐

부위원장 : 녹지지역 그대로 두고 학교용지로 시설결  
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일동 : 제안동의

## 안건 6 : 도시계획공원 일부변경

권지역계장 : 제안설명 (생략)

김희섭위원 : 지난 제 6 차 회 때 말씀드린대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보충설명 (생략)



김준석위원 : 지난 제6차 회의때 제안된 변경요청면적  
과 지금 김위원이 제시한 변경요청 면적  
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죠

권지혁계장 : 실제 신청평수는 12.510 평이었는데 김위  
원님께서는 다시 확인하시며 금번 2.525  
만 요청된 것입니다.

김희섭위원 : 지난번 회의때 제시된 변경요청 면적은  
저희 국방부가 사유지를 매입한 전체 평  
수인 12.510 평이었고 금번 본인이 제  
시한 면적은 그중에서 국방부에서 꼭 필  
요한 면적인 2.525 평만을 금번 요청한  
것으로 면적차가 생겼습니다.

나상기위원 : 헬리콥터장은 실제 공전용지내라도 가능하  
지 알겠는죠

김희섭위원 : 실제 급환자는 거위가 군헬리콥터로 운송

되는데 현재 김포비행장이나 서울비행장을  
이용해서 다시 운반되는 실정인바 본지역  
에 헬리콥터장은 꼭 필요합니다.

강민주위원 : 편지에 있어서도 제6차 회위때보다 훨씬  
들어들었고 또 국방상 필요한 편지만 신  
청한 것이나 별문제점이 없군요

위원 일동 : 동 의

안건 7 : 서울도시계획기본차로 및 광장(잠실지구) 일부변경

이가로계장 : 제안설명 (생략)

나상기위원 : 당초기본계획이 잘못된 계획이었다고 본다  
그리고 탄천을 가로지르는 영동과 잠실지  
역간의 교량계획이 너무 많으며 대개의  
경우 하천을 가로 대각선상으로 선이 편  
통되어 불합리한 계획이다.

강민주 " : 기본계획에 의해 주택들이 들어서 왔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 이 지역에는 주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전체가 다 환지지구이니가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는 없죠.

장민주위원 : 조정이 불가피한 계획이었다면 벌써 조정 검토되었어야 했을게 아니냐.

나상기 : 본 제안대로 벌써 조정되었어야 했을것이다. 그리고 타전을 통과하는 교량계획은 선형을 조정 직선 연결해야 한다.

부위원장 : 교량이 너무 많으나 실제로는 장래계획에 불과한 것이죠.

권태준위원 : 어떻게 계획상 차질이 생긴 이유는 무엇이었죠.

부위원장 : 기존 계획은 영동과 연결되는 하나의 방대한 거대한 계획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잠실지구관을 놓고 볼때 불합리한  
뉴타운계획이었기 한번 재조정 하는 것이며  
잠실지구관의 뉴타운 계획을 세우다보니  
불필요한 간선가로 및 지역간의 연결도로  
를 조정케 된 것입니다.

서명갑위원 : 중심지역내 간선도로 부력이 너무 큰것  
같다.

부위원장 : 교통건물이 들어설 지역이며 소로가 들어  
가게 되죠

강민주위원 : 호수는 그대로 둡니까

부위원장 : 그대로 둡니다.

서명갑위원 : 각종오염이 뽕일 텐데요

부위원장 : 실제로 탄천과 연결시킬 계획이며 그렇게  
되면 오염은 없게되죠

나상기위원 : 중앙부분에 있어서 도로의 연결이 양되는데

그것은 연결시켰으면 한다 (도면표시)

그리고 중심지구의 불필요한 도로는 없었  
으면 한다 (도면표시)

부위원장 : 부위원의 의견대로 시정조치하기 바랍니다.

이가로계장 : 도면수정

이원환위원 : 현장의 수위문제인데 과거와 현재보다도  
편장 때에는 지금까지보다 더많은 비가 온  
다고 보고 지구안의 배수시설의 설치  
를 해야 될것 같다.

부위원장 : 수리모형 실험에 의해서 배수문제는 걱정  
없는데 내수가 걱정이다. 이런점을 감안  
비가 많이 올경우는 미리 취수장을 통해  
이 지구안의 물을 밖으로 퍼내면 문제가  
없다.

나상기위원 : 순환도로 40m 연결이 지구내에서 끈겼는데요

이가로계장 : 지구버를 통해서 연결시켰죠 (도면설명)

강민주위원장 : 그럼 지금까지의 각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제안을 수정하도록 실무자에 위임시키죠.

이가로계장 : 잠실지구 간선가로 일부조정으로 한강상류까지 간선도로 연결이 불가피 (도면표시) 하게 되어 저희들이 1안, 2안을 계획해 놓았는데 어느 안을 택하는 것이 좋은지 결정시켜 주십시오

부위원장 : 번두리 지역의 통과연결이 아니라 별도제점이 없으므로 2안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가로계장 : 도면표시

나상기위원 : 본 계획에 찬동한다.

위원일동 : 제안 동의

간사 : 이상으로 제1회 본회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 폐 회 -

74. 5. 24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

(제7차회의)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 차 례

一. 도시계획위원회 제6차(74.5.10) 회의록	3
二. 도시계획소위원회(74.5.20) 회의록	29
三. 제7차(74.5.24) 도시계획위원회심의안	39
1.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결정	41
2. 도시계획응도지역일부변경	45
3. 시장용지 시설결정	49
4. 시장용지 용도변경	53
5. 학교용지 시설결정	57
6. 도시계획공원일부변경	61
7. 서울 도시계획기본가로 및 광장(잠실지구)일부변경	65



# 一 도시계획위원회제6차회의록

(74. 5. 10)

## Ⅰ. 도시계획위원회 제6차 회의 요약

안건 1 : 강변5로 및 순환도로(대2-20호) 일부변경  
취안가결통과

안건 2 : 도시계획도로(소로) 일부변경  
취안가결통과

안건 3 : 도시계획도로 신설  
취안가결 통과

안건 4 : 도시계획시설(시내버스주차장)결정  
취안가결 통과

안건 5 : 도시계획공원 일부변경  
다음 회의에서 재심의키로 가결

안건 6 :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일부변경  
수권소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안건 7 :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 일부변경  
정능, 세검정유원지 해제지역에 대하여는 수권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대로 봉치지구  
로 지정키로 가결. 우이지구에 대하여는 수  
권소위원회에서 주거지역으로 지정키로 의결된  
사항이나 본 회의에서 봉치지구로 지정토록  
결의

안건 8 : 도시계획 봉치지구 일부변경

수권소위원회를 구성 별도 심의검토 후 결정  
토록 가결

안건 9 :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수영장) 결정

원안가결 통과

안건 10 : 일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설결정

원안가결 통과

##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1. 일시 : 74. 5. 10 16:00
2. 장소 : 도시계획과장실
3. 안건 :
  1. 강변5로 및 순환도로(대 2-20호) 일부변경
  2. 도시계획도로(소로) 일부변경
  3. 도시계획도로 신설
  4. 도시계획시설(시내버스주차장) 시설결정
  5. 도시계획공원 일부변경
  6.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일부변경
  7. 도시계획 응도지역지구 일부변경
  8. 도시계획 등치지구 일부변경
  9. 도시계획시설(운동장, 수영장)결정
  10.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설결정

### 4. 참석위원

상임위원 김 종 성

위	원	이	성	우
“		나	상	기
“		이	우	현
“		원	태	준
“		서	영	갑
“		김	준	석
“		이	원	환
“		장	민	주
“		김	희	섭 (이상 10 명)

## 5. 기타참석자

한강건설사업소장, 간사 (도시계획과장)

이가로계장, 원지역계장, 이종합계장

## 6. 기록

연구원 이응섭

# 회 의 록

※ 위원장 및 부위원장 불참으로 이성욱 위원이 회의  
의견행을 맡음

이성욱위원 : 개회사 (생략)

지난번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및 소위원  
회 회의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시오

이가로계장 : 제5차회의 (74. 4. 23) 및 소위원회 (74.  
5. 3) 회의결과보고 낭독 (생략)

이성욱위원 : 상기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실지 없  
으시면 본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일동 : 동 의

안건 1 : 강변5로 및 순환도로 (대 2-20호) 일부변경

이가로계장 : 제안설명 (생략)

나상기위원 : 고시안 선을 약간 변경이군요

이가로계장 : 그렇습니다. 순환성은 일부 위치변경이고  
강변으로는 증대(연장) 이므로, 그리고 본  
안은 건설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이성욱위원 : 중앙 도시 계획위원회까지는 안 올라 가지  
않나.

이가로계장 : 강변으로(시설) 구간은 올라가죠.

김종성상임위원 : 변경시키므로서 생기는 행정상 문제점  
은 무엇 인요.

이가로계장 : 순환도로의 위치변경으로 인해 이제까지  
저촉안되는 토지 및 건물이 일부 저촉이  
되어 민원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며 행정  
상으로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나상기위원 : 강변으로는 고속도로 역할을 담당케 되는  
군요.

이가로계장 : 현재 한강상류의 댐공사 계획과 그리고

교량공사로 인한 강변도로 연결이 불가피  
하죠.

이성욱위원 :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없으십니까.

이우현위원 : 건설부까지 전달된다니 별 이견은 없는데  
다만 현재 순환도로 계획선이 있는데 또  
강변도로를 그 옆에다 신설한다는 것은  
석연치 않다. 과연 통과 교통이 원활하  
나. 물론 강변도로는 고속화 도로로서  
장차 계획과 관련시켜 생각하다 해도...

권태준위원 : 한곳에 그렇게 2개의 도로를 두어야 한  
한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될 줄 안다.

이성욱위원 : 그 이유를 오늘 이자리에 참석하신  
한강건설 사업소장의 이야기를 들읍시다.

한강건설 사업소장 : 제안설명(생략)

참고로 현재 정부에서는 김포에서 행주산



상에 이르는 난지도 교량공사가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되는 것을 말씀드리며 그  
계획과 관련되어 현재 도면 표시와 같이  
강변도로가 별도로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  
에 제안하는 것입니다.

나상기위원 : 총 연장구간은 얼마나 되죠?

한강건설사업소장 : 약 1km 정도 됩니다.

나상기위원 : 현재 서울시민이 강변도로로 인해 한강과  
의 거리를 당하고 있는데 구태여 순환도  
로까지 인접해 있는 이 지역까지 다른 곳과  
마찬가지의 재현상을 시켜서야 되겠느냐  
적어도 모든 교통은 순환도로로 이용하도  
록 하게 하고 이 지역에는 공원으로 만  
들어 시민의 휴양지로 하자

한강건설사업소장 : 강변도로에 별도 시민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로 설계상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설계도면 설명 (생략)

서영갑위원 : 2개의 도로가 서로 평면상입니다.

김준석위원 :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으니가 문제죠

한강건설사업소장 : 순환도로 변경구간에 대하여는 평면상으로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이성욱위원 : 같은 지역에 2개의 도로가 꼭 필요하냐는 문제인데 이 지역에는 평면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지역이며 그 기능상으로 볼때 하나는 고속화 도로이며 하나는 순환 일반통과 도로로서 참차 한강하류의 남지도 개발계획과 관련 검토컨데 별의의가 있지않을까요

권태준위원 : 공사는 금년에 합니까?

한강건설사업소장 : 현재 강변도로공사는 착공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욱위원 : 크로사업으로 하는 이유는

한강건설사업소장 : 정부시책에 의해서입니다.

이천환위원 : 서울댐 건설계획과 관련 수리모형 실험에  
위한 이상여부가 확인되었는지요

한강건설사업소장 : 이상이 없습니다.

이천환위원 : 하천구역안으로 도로가 들어올수는 없다  
그리고 성산동 기수지배 배출시설문제까지  
사실한 것으로 있는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한강건설사업소장 : 성산동 기수지공사는 현재 진행중입  
니다.

이성욱위원 : 한강하류 댐이 건설될 경우 수위를 고려  
해서 검토해야 될줄입니다.

간사(최제혁파장) : 그것은 고려되어 있습니다.

## 보충설명 (생략)

나상기위원 : 당초 순환도로 계획상이 강변쪽으로 나온  
이유는

간 사 : 해지역이 지형상 지대가 높(산)아 그쪽으  
로 책정된 것으로 압니다

김준석위원 : 본인은 찬안대로 찬성합니다

이우현위원 : 도로의 기능상 문제가 있다면 모르되 그  
형지 양도는 곤란하지 않나

나상기위원 : 약 3억원을 투자해서 도로를 축조한다

해도 현재로서는 차량통과가 이 지역에는  
없을텐데 그 투자액을 시급을 요하는 다른  
곳에 투자가합이 부담하지 않나

서병갑위원 : 2개의 도로를 서로 접합시키면 어떻게 할  
까요

간 사 : 고제가 있어 곤란합니다

나상기위원 : 다른곳의 순환도로 폭이 25m 인데 비해  
이곳은 30m 로 된 이유는

이가로계장 : 이곳은 순환도로의 기능과 그리고 이로서  
선 연결이 파주방면의 불광동 까지 연결  
되는 기능을 갖기 때문이죠

이성욱위원 : 순환도로 변경으로 인한 새로이 저축되는  
사유재산은

이가로계장 : 도로공사시에 사유지는 매수해야죠

강민주위원 : 도시계획상 문제점이 없고 또 장래 한강  
하류의 댐건설 및 준공업단지가 조성될  
정우를 감안해 볼때 문제점은 없지 않  
을까요

이우현위원 : 그렇다면 2개의 도로중 하나는 고속화한  
강변유로도로로 그리고 하나는 순환도로의  
기능으로 보면 되겠군요

나상기위원 : 교통처리계획으로 볼 때 순환도로의 위치 일부 변경에는 이의가 없으나 문제는 해 지역에 또 강변도로를 두어야 하나다.

간 사 : 공사시공면에서는 우선 강변도로 추조 공사 부러 하게 되죠. 그리고 순환도로 공사는 미정입니다

이원환위원 : 한곳으로 도로의 기능을 집중 시킨다는 것은 모순된 일이 아니냐

간 사 : 교량건설이 되고 또 김포에서 직접 경기도 교양군 신도면으로 직접 연결되는 도로계획이 있고 보면 통과 교통 집중은 자연히 분산 될 것으로 봅니다

이우현위원 : 당초 제방추조 공사를 하더라도 도로가 그 제방공사에 맞추게 되었으니 해주는 게 좋겠다

이성우위원 : 장래계획을 감안해 볼때 제안대로 통파  
시키죠 그리고 도로의 공사집행 목적은  
당구에 일임 시킵시다.

위원 일동 : 동 의

이성우위원 : 그럼 본건은 찬안 가결합니다.

## 안건 2 : 도시계획도로(소로) 일부변경

이 가로계장 : 제안설명 (생략)

나 상기위원 : 새마을도로는 도시계획부서의 사전협의도  
없이 구청재량으로 공사를 합니다

이 가로계장 : 토지보상문제등을 고려 현지도로를 최대한  
활용해서 구청장 재량으로 시공하죠

이성우위원 : 찬 이의 없으시면 찬안 가결합니다

위원 일동 : 동 의

### 안건 3: 도시계획 도로 신설

이 가로계장 : 제안설명 (생략)

나상기위원 : 폭 12m의 연결도로는

이 가로계장 : 기고시된 가로계획도로에 연결되죠

강민주위원 : 주차장도로 역할을 하자는 것이군요

나상기위원 : 이지구내의 재개발계획 그리고 전체적인  
종합계획과 관련시켜 검토되어야 한다

간 사 : 해당로 재개발계획과 관련 검토된 것이며  
본 확정에 있어서도 건설부까지 올라감니다  
그리고 재개발구는 계획에 맞는 자기네들이  
요청된 안이며 도로가 개설되면 시에  
기부채납케 되죠

이성우위원 : 당초 재개발 계획안에도 본계획안이 있습니까

간 사 : 있습니다

이우현위원 : 그러면 폭 12m에 연결되는 소로는 폭이



얼마나 됩니까

이 가로계장 : 8 m가 표시되어 있죠

김재개발계장 : 제안이우설명 (생략)

이우현위원 : 기 계획도로가 있었든것을 확폭하려는것입니까

간 사 : 기 표시된 8 m 폭을 12 m로 확폭하는 것이죠

이 가로계장 : 부근 가로계획도 설명 (생략)

이성욱위원 : 부근 가로망계획을 보니 뿔문제점이 없군요

이우현위원 : 그 계획도로를 제안도면에 표시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문제점이 없군요

위원 필동 : 제안동의

#### 안건 4 : 도시계획시설(시내버스주차장) 결정

이 가로계장 : 제안설명 (생략)

나상기위원 : 필지사이의 소로폭원은

이 가로계장 : 8 m입니다 신청서에 보면 하나는 후생

시설을 짓겠다는 것이고 하나는 순수한 차고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이성욱위원 : 시설주차장 인조

이 가로계장 : 시내버스주차장이요

나장기위원 : 적절한 주차장의 평수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이 가로계장 : 정확한 면적은 알수 없으나 지금까지  
30대 주차면적이면 해준 것으로 압니다

나장기위원 : 정확한 기준면적이 있을줄 아는데 차후  
후회는 그 평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 : 제안 동의

### 안건 5 : 도시계획공원 일부변경

권지역계장 : 제안설명 (생략)

이성욱위원 : 해제지역의 토지소유는 누구입니까

권지역계장 : 시우지로 쿠방부에서 매수해야죠

나상기위원 : 해제해 달라는 특별한 사유라면

권지역계장 : 쿠방부에서 요청된것이며 현재 있는 근동합  
병원의 시설확충으로서 해제지역에 암치료  
소를 신축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상기위원 : 공원해제에 대하여는 근본적으로 좋은일이  
못 된다

김종상상임위원 : 쿠방부에서 수용합니다

간 사 : 그렇습니다

나상기위원 : 확보한 자료제시가 없으니 심의할수 없다

장만주위원 : 소음공해가 없는 시설인것

김희섭위원 :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는 본인이 좀더 확  
고한 자료를 수집 파악하여 다음회의때  
제시하겠으니 본건은 다음 회의로 미루어  
주십시오

위원 일동 : 그렇게 함이 좋겠습니다.

간 사 :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는 김희섭위원 말씀  
대로 다음회의에서 재심의키로 하죠.

강민주위원 : 현재 있는 공원용지 만이라도 더침식되지  
못하도록 노력하여야 겠고 공원을 변경  
해달라는 요청자들에게 좀더 공원의 필요  
성을 주입시켜 인식을 새로히 갖게하도록  
합시다.

이성욱위원 : 그럼 본건은 다음 회의에서 재론키로  
합시다.

위원 일동 : 동의

### 안건 6 :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일부변경

권지역계장 : 수권소위원회 (74.5.3) 심의 의결된 사항을  
보고 및 도면 설명 (생략)

간 사 : 보충 설명 (생략)

## 안건 7 : 도시계획용도지구 일부 변경

권지역계장 : 제안설명 (생략)

정능, 세검동 유원지 해제에 따른 풍치 지구 지정에 따라서는 수권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바와같이 해제와 동시 풍치 지구로 지정키로 하였습니다.

위원일동 : 제안 동의

권지역계장 : 우이 지구는 수권소위원회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키로 결의되었습니다 (도면설명)

이성우위원 : 우이 지구는 지난번 수권소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이 아니냐. 이 지구는 현재 버스 주차장이 들어설 계획이며 그리고 거위가 주택이 들어서고 매지화 되어 있는 지역임을 감안 그렇게 결정을 하기로 한 것이다.

나상기위원 : 우이 지구도 풍치 지구로 해줍니다. 사실

현황 사진을 보니 짐들이 별로 들어서지 않  
습니다.

강민주위원 : 수권소위원회에서 일단 결정이 된것이지만  
본회에서 의견들이 풍치지구로 변경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니 이지구도 그렇게 할  
수 있지않을까요.

간 사 : 본회에서 의견들 일단 그렇다면 수권소위  
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이라 할지라도 할수  
있습니다.

위원일동 : 동 의

### 안건 8 : 도시계획 풍치지구 일부 변경

권지역제장 : 제안설명 (생략)

간 사 : 보충설명 (생략)

나상기위원 : 풍치지구 내에서는 8㎡ 이상은 못짓게

하는 근거는 뭐죠.

간 사 : 당시 방침에 의해 통제하는 거죠.

나상기위원 : 오히려 풍치지구를 많이 지정해서 풍치지구 면적을 늘려야 할 차제에 해제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못되는군요.

이성욱위원 : 현장답사등 조사검토후 처리기로 합시다.

김종성상임위원 : 보충건물 현황 설명 (생략)

나상기위원 : 몇층을 짓겠다는 것입니까.

간 사 : 5층이죠.

나상기위원 : 그러면 문제가 없을텐데요. 왜냐하면 시에서 자체 방침에 의해 규제하고 있는 것이니까 건축허가를 해주면 될터이니 구리여 인근 지역까지 해제해야만 한다는 것은 곤란하다.

강민주위원 : 본건은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 현장답사 검토후 결의토록 합시다.

간 사 : 그림본건은 별도수권 소위원회를 구성 원장  
답사 검토후 심의결정토록 하죠.  
위원 일 동 : 동 의

### 안건 9 : 도시계획시설 (운동장수영장)결정

권지역계장 : 제안설명 (생략)

간 사 : 보충설명 (생략)

위원 일 동 : 제안동의

### 안건 10 : 일단의주력지조성 사업시설 변경

이종합계장 : 제안설명 (생략)

나상기위원 : 몇층입니까.

이종합계장 : 5층건물이죠

이성욱위원 : 신규사업입니까

이종합계장 : 그렇습니다.

나상기위원 : 좋은일이다. 세방규정등 여러가지 규정판 짜는  
검토되었는지

이종합계장 : 검토된것 입니다

위원 일 동 : 제안동의

이성욱위원 :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전부마치겠습니다.



## 二. 도시계획소위원회 회의록

(74. 5. 20)

二 도시계획 소위원회 (74. 5. 20) 회의록

도시계획 소위원회 회의 요약

안 건 : 도시계획 동치지구 일부변경

결의사항 : 원안 일부수정하여 가결키로 결의  
(별첨 도면 참조)

회 의 내 용

1. 일 시 : 74. 5. 20. 15:00

2. 장 소 : 도시계획과장실

3. 안 건 : 도시계획동치지구 일부변경

4. 참석위원 :

상임위원	김	종	성	
위	원	이	성	욱
"		나	상	기
"		이	우	현
"		권	태	준

5. 기타 참석자 : 간사(도시계획과장) 구획정리/과장  
건축과장 권지역계장

6. 기록 : 이응섭

## 회 의 록

권지역계장 : 제안설명 (생략)

구획정리과장 : 보충설명 (생략)

나상기위원 : 일부 구획정리지구내 풍치지구 해제는 언  
제 심의처리되었는조

이성욱위원 : 전 도시계획 위원들이 지실때 심의 처리되었  
음나다.

간 사 : 보충설명 (생략)

권태준위원 : 그림 금번 심의코져 하는 부분은 그 외 지  
역이군요

간 사 : 그렇습니다

나상기위원 : 간선도로 폭원은

간 사 : 25<sup>m</sup>입니다.

나상기위원 : 그렇다면 곤란하데

간 사 : 현재도이 25<sup>m</sup> 도로변은 3종미관 지구로서

100평 미만으로는 분할의 제한을 받습니다.

이성욱위원 : 면적만으로 의존될 일어 아니다.

권지역계장 : 문제는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이며 동치지구내이니 층수의 제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간사 : 8층 이상은 못짓는다는 거죠.

권태준위원 : 언젠는 동치지구로 묶었다가 이제와서는 뜯겠다는 이유는

간사 : 이 지구에 동치지구를 지정할 당시는 잠실 영동 그리고 강변도로와 잠실교등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던 때이며 지금에 와서는 신시가지 개발 및 계획상 일부임상이 좋은 지역은 그대로 두고 일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해제했던 것입니다.

나상기위원 : 8층 이상은 못짓는다는 법이있으면 제시하십시오.

권지역계장 : 자료제시

이성욱위원 : 몇동은 짓겠다든 것입니까

구획/과장 : 3동을 짓겠다든 것입니다

나상기위원 : 신청지 전체가 체신부소유입니까

권지역계장 : 체신부에서 요청된 해체면적은 4718<sup>6</sup>평  
이고 그에 따라 일부연결부분까지 추가시키  
는 사유지포함이 약 12천평 됩니다

그리고 요청된 건립동수는 7동입니다

이성욱위원 : 아파트 7동 건립지라면 풀어주어야 한다

나상기위원 : 아파트를 들어스는 조건이라면 좋다

권지역계장 : 체신부요청지는 그런조건을 부치지만 그외  
추가 지역은 어떻게 하죠

이성욱위원 : 꼭 신청부지 특정지만 가지고 제안심의  
할게 아니라 당초제안시에는 추가인근 부  
지까지 전부포함시켜 제안될것이 아니냐

나상기위원 : 그렇다면 체신부가 요청한 4718의 명에 대하여는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조건하에 풀어준다. 다만 나머지 추가지구가 문제군요

이성옥위원 : 당초한건으로 취급되어야 했을것이다

권태준위원 : 임상이 좋다고해서 묶어버리고 없다고해서 해제한다는 것은 곤란하며 어디까지나 확실적인 계획에 의해 다루어져야 할것이라고 본다.

간 사 : 이 지구에 대하여는 구획정리 계획시 다루어져야 됐을것입니다.

나상기위원 : 25<sup>번</sup> 도로윗부분에 대하여는 이해가 가나 밑쪽의 일부 체신부 부지쪽은 이해가 어렵다.

김종성상업위원 : 환지당초에 도로에 저촉된 개인사유지를 일부 체신부 소유지쪽으로 환지를 주었기 때문에 사유지 일부가 있게 된것입니다.

- 나상기위원 : 이지구는 2종미관지구로서 3층이상이어야  
 되니까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 간 사 : 풍치지구내에서는 미관지구라 하더라도 3층  
 이상은 못짓고 다만 토지분할면적만은 동  
 일하게 100평의 제한을 받습니다.
- 건축과장 : 미관지구라 하더라도 풍치지구내 경우는  
 건축의 제한을 받습니다.
- 권태준위원 : 간선도로의 교차지역으로 이지역 일대의  
 중심지역이군요.
- 나상기위원 : 외국예를 보면 오히려 교차점4각부분에  
 한쪽에 건물이 낮으므로써 조화를 이루는  
 예도있다.
- 집단 체신부 부지가 풍치지구로 있으나  
 이부근을 그대로 두는게 좋겠다.
- 건축과장 : 이지역 일대의 중심지역이고 또 토지 지용

장래연구도벌지역인 이곳을 그대로 품치지  
구로 묶어두는게 바람직한 일이라는 것입  
니다.

권태준위원 : 집단채신부 부지는 현재 무엇이 있습니까?

구획정리/과장 : 장거리 송수신철람이 있습니다.

부상기위원 :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감안 그럼 채신  
부 신청부지에서 집단채신부 부지사이의  
일부분은 제외하는 것으로 원안일부 수정  
합니다.

위원일동 : 동의

간 사 : 도면수정

권지역계장 : 그럼 소위원회를 전부마치겠습니다.



# 三七七차(74.5.24)도시계획위원회 부의안건

1.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결정 ————— 41
2. 도시계획용도지역일부변경 ————— 45
3. 시장용지 시설결정 ————— 49
4. 시장용지 용도변경 ————— 53
5. 학교용지 시설결정 ————— 57
6. 도시계획 공원일부변경 ————— 61
7. 서울도시계획기본가로 및 광장(잠실지구)일부변경 — 65



결 의 번 호	
결 의 년 월 일	1974. 5. 24
	제 7 회

결 의 사 항

도시계획시설 ( 유통업무설비 ) 결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의안건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제출년월일	1974. 5. 24

# 1.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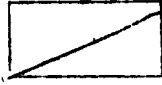
## 1. 의결주둔

도시계획 유통업무설비 시설결정에 관한부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가. 유통업무 설비 시설 결정조서

명칭	위치	면적	비고
유통업무설비	도봉구 월계동 424 성북역 주변 일대	402,900 <sup>m<sup>2</sup></sup>	성북유통업무설비

나. 1) 철도청장과 성신화학주식회사로부터 서울 동부 지구 주민을 위한 화물센터 200만톤 취급계획에 의거 유통업무시설 결정에 따른 응도지역 변경을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품의하였던바

2) 74.5.9 자 건설부 고시 제133호로 결정고시되었으므로 성북역을 중심으로 서울 동부 지구 유통업무설비 시설을 결정코저함



결의 번호		결의 사항
결의 연월일	1974. 5. 24	
	제 7 회	

도시계획응도지역 일부 변경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의안건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제출 연월일	1974. 5. 24

2. 도시계획용도지역 일부 변경

당시 도시계획 주거지역중 주거전용지역으로 지정 결정하는 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가. 용도지역 일부 변경조서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확정	
주거지역	323,560.347	(감) 5,068.200	318,492.147	
주거전용지역	1,040.612	(증) 5,068.200	6,108.812	
상업지역	17,925.687	—	17,925.687	
준공업지역	38,371.790	—	38,371.790	
녹지지역	339,977.564	—	339,977.564	
계	720,876.000	—	720,876.000	

도면표시와 같음

나. 지정사유서

1. 당시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주거지역 323,560.347<sup>㎡</sup>

중 주거의 안정과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극  
 장 유흥장등 유락시설과 고층 빌딩으로 인한 원반자  
 정주택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10개지역 5,068,200<sup>m</sup><sup>2</sup>를 주거  
 전용지역으로 지정코자함.

다. 지역별 면적조사

번호	위 치	면 적 (m <sup>2</sup> )	비 고
1.	평창동, 구기동 일부	1,010,000	
2.	성북동 2가 일부	1,180,000	
3.	누상, 누하 통일 일대	1,040,000	
4.	가회동, 원사동 일부	300,000	
5.	신문로 2가, 내수동 일부	270,000	
6.	하대원동 일부	415,000	
7.	한남동 일부	162,000	
8.	장충동 일부	262,000	
9.	연희동 일부	240,000	
10.	홍은동 (표수단지)	789,000	
	계 10개지역	5,068,200 <sup>m</sup> <sup>2</sup>	



결의번호		결의사항
결의년월일	74. 5. 24	
	제 7 차	

시 장 용 지 시 설 결 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위원회 결의안건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제출년월일	74. 5. 24

### 3. 시장용지 시설결정

#### 1. 결의주문

도시계획 시장용지 시설결정에 관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가. 시설결정조서

순번	시장명	위치	면적	비고
1	반포시장	관악구 동작동 307-56 와3필지	5,780 평	상가 (25m도로변)

#### 나. 현황 및 사유

주택공사로 부터 사용승락을 받아 반포상가 주식회사 대표 신동성으로 부터 신청된 것으로 반포단지 매립지의 현재 아파트가 건립중인 25m 도로변의 상가로서 현재용도지역은 주거지역임.

#### 다. 기타사항





결 의 번 호	
결 의 년 월 일	74. 5. 24
	제 7 회

결 의 사항

시 장 용 지 용 도 변 경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의안건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제출년월일	74. 5. 24

#### 4. 시장용지 용도변경

##### 1. 결의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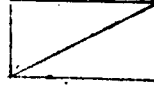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장용지 용도변경에 관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가. 변경조서

위	처	면	적	비	고
성동구	성수동 2가 167-20	1,008	2평		

##### 나. 변경사유

- 1) 똑도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로서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체비지(시장용지)로 지정 매각된바 있으나
- 2) 현재 상가지역 일대가 용도지역상 준공업지역으로서 공장이 밀집되어 있어 시장으로서의 용도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바 금번 상가지역소규모로부터 용도변경 요청이 있는것임.



결 의 번 호	
결 의 년 월 일	74. 5. 24
	제 7 회

결 의 사항

학 교 용 지 시 설 결 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의안건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제 출 년 월 일	74. 5. 24

## 5. 학교용지 시설결정

### 1. 결의주문

도시계획 학교용지 시설결정에 관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가. 시설결정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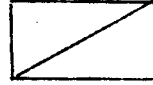
순위	학교명	위치	면적	비고
1	광명고등학교	경기도 시흥군 광명리 산90외2필지	평 7,657	

#### 나. 현황 및 사유

시흥군수로 부터 요청된 사항으로 현재 신청지가 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으로서 일부지역은 임목이 없는 지목상 임야임.

#### 다. 기타사항

등교부 및 내무부에서 광명단지 주민대책에 관한 행정지원방안 관계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임.



결 의 번 호		결 의 사항
결 의 년 월 일	1974. 5. 24	
	제 7 회	

도시 계획 공원 일부 변경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의안건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제출년월일	1974. 5. 24

## 6. 도시계획 공원 일부 변경

서울시 도시계획공원 일부변경에 관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가. 공원변경소서

번호	공원명칭	구분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31	화곡공원	근린공원	영등포구, 등촌 화곡동	732,300	41,280 (12,510평)	691,020

### 나. 변경사유

- ① 영등포구 북동에 위치하고 있는 육군수도 통합병원 주변정화계획에 의거 1972. 8. 4자 건설부고시 제313호 공원일부변경 결정계획 고시된 공원용지임
- ② 국방부장관으로 부터 육군수도 통합병원 시설부지

인 입야에 동병원 운영에 절대 필요한 암치료  
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공원용지 해제요청한것임

가) 74년 공사계획

① 암치료소 신축공사 : 건물 1동 (1,83평) 신축

헬기장 1개소 설치

순환도로 시설 및 연

병장 정리

② 예산 : 86,600,000 원

③ 기간 : 74. 4. 20 - 74. 11. 30